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5. 26 선고 2021가합752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담당변호사 맹주석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좋은사람

담당변호사 김명희, 안희정

변 론 종 결 2023. 4. 28.

판 결 선 고 2023.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7. 체결된 신탁계약은 258,000,000원의 범위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1.자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5. 17.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2019. 12. 9. 접수번호 제152946호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배우자 C은 원고가 피해자인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2021. 4. 29. 기소되어 2022.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비상장회사 (주)D 주식의 실제 주가는 100원대에 불과하여 재산가치가 없고 상장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상장되면 곧 주식 가치가 상승할 것처럼 기망하여 주식 판매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D 대표 E과 (주)D 비상장주식 100만 주에 대한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 중개회사인 F 소속 직원들에게는 상장 예정으로 주가가 1만 원을 호가하는 (주)D 주식을 피고인이 매수하였으니 위 (주)D 주식을 판매하면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주겠다고 영업을 독려하였다. 이에 따라 F 소속 직원인 G은 피고인이 알려준 허위 정보를 근거로 2018. 7. 9.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회사 (주)D 주식을 사면 수개월 내로 투자금 3-4배를 벌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 D 주식은 1주당 1만원을 호가하지만 6,900원에 넘기겠다.”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8. 7. 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1,050,000원, 2018. 8. 6. 37,950,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6,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F 소속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비상장주식을 판매하여 왔으나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해 제대로 수익을 남기지 못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불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고급

차를 타고 다니며 재력을 과시해오던 중 피해자가 전세금 환불을 위해 주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8. 9. 21.경 위 I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데 2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1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9. 27.경 위 170,000,000원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일단 담보로 (주)D 주식 3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D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6,900만 원, 차용금 명목으로 189,000,000원 합계 25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피해 금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22.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피해 금원 258,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고, 피고는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서 배우자인 C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았으므로, 피고와 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다2467 판결,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참조).

그러나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C이 기망행위를 통하여 원고의 금원을 편취한 2018. 7. 9.경부터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원고가 사해행위 발생 시점으로 주장하는 위 2016. 5. 17. 당시에 위 피보전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피보전채권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석, 판사 장한홍, 판사 이균철

[별지]

1동의 건물의 표시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아파트 L동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49층 공동주택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고양시 일산동구 J 대 36475.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4층 M호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04.9074㎡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36475.8분의 41.032. 끝.

